



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위한



서울특별시-농협중앙회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는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가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업)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도시농업 활성화
 - 가.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보급
 - 나. 공기정화식물 보급
 - 다. 자치구별 「도시농업지원센터」 설치·운영 협력
 - 라. 「서울 먹거리창업센터」 입주기업 판로 지원 및 농식품산업 발전 협력
 - 마. 「서울 도시농업박람회」 개최 협력
2. 도농상생 추진
 - 가. 대학생 농촌봉사단 운영
 - 나.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
 - 다. 귀농귀촌 종합 컨설팅
 - 라. 화훼류 직거래장터 운영
 - 마. 쌀 소비 촉진운동 전개
 - 바 『상생상회』 입점상품 판로지원
3. 서울 농업인 지원
 - 가.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
 - 나. 안전보험 가입 지원
 - 다. 로컬푸드 농산물 및 토양 안전성 검사 지원
4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

제3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,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자료의 제공 등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한다.

제5조(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)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,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효력)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.

제7조(협약서 보관)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4월 10일



시장 박원순



회장 김병원